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7. 21 선고 2019나244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7. 21 선고 2019나2446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. 4. 10 선고 2018가소9972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

담당변호사 이재원, 손인준, 장석철

피고, 항소인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안

담당변호사 B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봉

변론 종결 2020. 6. 16.

판결 선고 2020. 7. 21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. 4. 10. 선고 2018가소9972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7. 28.부터 2020. 7. 21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

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
3. 소송총비용의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

원고는 2009. 12.경 변호사인 피고를 찾아가 원고가 C 소유의 파주시 D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(이하 '이 사건 민사소송'이라 한다) 제기를 의뢰하면서, 피고에게 2008. 9. 23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해 원고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까지 건네주었다. 피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 사건을 2,000만 원에 수임하기로 하여, 원고가 2009. 12. 7. E 명의로 1,000만 원을 송금하고, 2010.경 추가로 1,000만 원을 교부하였다.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

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, 원고에게 선임료 2,000만 원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.

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, 실제로는 위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,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, 위 기망을 이유로 피고와의 선임계약을 취소하고 위 2,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.

설사 피고의 기망이 없었다 하더라도, 피고가 약정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더 이상 진행할 의사도 없어보이므로,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선임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2,0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.

나. 피고

피고가 2009. 12. 7. E 명의로 입금받은 1,000만 원은 F의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것일 뿐, 이 사건 민사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. 당시 F의 형사사건 선임료가 2,000만 원이었는데, 그 중 1,000만 원은 F의 처 G이 납부하였고, 나머지 1,000만 원은 위 형사사건을 의뢰하였던 원고가 선임료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하면서 대납한 것이다.

피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선임료로 2010.경 액면금 1,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, 그 후 피고가 원고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, 당사자적격 상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원고에게도 설명하였다. 본래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등 업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, 피고는 원고의 다른 사건들도 담당하고 있었기에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하고 돌려주려는데, 원고가 일단 놔두라고 하여 가지고 있다가, 결국은 위 돈을 반환하는 대신 피고가 F로부터 받지 못한 형사 성공보수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원고와 합의를 하였으므로, 피고는 위 금원 역시 반환할 이유가 없다.

2. 판단

가.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

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2,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나.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

(1) 기록에 의하면, 원고가 2010. 일자불상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 제기를 의뢰하면서 선임료

명목으로 피고에게 1,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, 당시 피고는 원고의 형사사건(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사건이 I로 재배당되었고, 후에 J에 병합되어 심리됨)도 변호하고 있었는데, 위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해 K과 L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2010. 8. 경 알게 된 사실(을 제4, 5호증), 원고 역시 피고의 설명 및 위 형사사건에서의 변론내용을 통해 그 무렵 위 내용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(2) 원고는, 피고가 2009. 12. 7. E 명의로 입금받은 1,000만 원 역시 이 사건 민사사건의 선임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수령사실을 시인하는 다른 1,000만 원 지급시기 및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지한 시점 등과 시기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고,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(3) 피고는, 이 사건 민사소송의 선임료를 반환하는 대신 이로써 F의 성공보수 지급에 갈음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.

(4) 소결

이 사건 민사사건에 관한 수임계약은 원고의 해제통보에 따라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. 7. 27.경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1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7. 28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. 7. 21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)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,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흥권

판사이효두

판사박이규